

# 헌법집중(전정6판) 추록1

P 058 판례박스 대체

**인구편차 허용기준의 의미**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에 최소 1명의 시·도위원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규정이 시·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벗어난 선거구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 여부(소극) ▶ 2025.10.23. 2022헌마1247 [헌법불합치]

이 사건 전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이 사건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수는 -56.29%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. 이 사건 전북도의회의원 선거에서 36개 선거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이 사건 장수군 선거구가 단독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된 것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·시·군의 지역구 시·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시·도의원 지역구를 '자치구·시·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획정'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접한 2 이상의 자치구·시·군의 관할구역을 합하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.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에 최소 1명의 시·도위원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나, 이를 위해 그 자치구·시·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'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'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,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기본적인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.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선거구 획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선거 제한의 한계로서, 인구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이러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.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 사건 선거구의 한계일탈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,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이 사건 선거구 부분은 이 사건 선거구역 평균인구수 기준 인구편차 하한 50%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.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.